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84

발의연월일: 2024. 1. 9.

발 의 자:권영진·김상훈·김형동

우재준 • 김소희 • 이양수

이종배 · 김도읍 · 인요한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 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 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②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		
	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		
	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		
	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토지소		
	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		
	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		
	<u>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지구의</u>		
	지정을 제안하는 자"로 본다.		